

제429회국회
(정기회)

법 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3일(화)

장 소 법 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0)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8)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4)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6)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8)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2)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6)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5)
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3)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1)
11.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357)
12.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6)
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5)
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5)
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5)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1)
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6)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1)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1)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4)
 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8)
 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2)
 2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0)
 24.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2)
 2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4)
 2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1)
-

상정된 안건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0) … 3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8) … 3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4) … 3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6) 17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8) 17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2) 17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6) 17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5) 27
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3) 27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1) 33
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405) 37
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65) 37
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55) 37
11.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357) 49
12.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6) 49

(14시13분 개의)

○소위원장 김용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소위원장님은 의사진행발언 주시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이성윤 위원 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는 게 소원이네요.

○이성윤 위원 1소위도 의사진행발언을.....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런데 사실 소위에서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게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이따 충분히 하십시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0)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8)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4)

(14시14분)

○소위원장 김용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나경원 위원 그냥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것 하나는요.....

○소위원장 김용민 보고에 앞서서 발언하시는 것이지요?

○나경원 위원 예.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먼저 짧게 발언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간사가 없으니까 협의를 안 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일정이 되는데 그래도 약간 좀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 일정이 10시 갔다 2시 갔다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만 협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것은 진짜 우리의 권리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일단은 청을 하고요.

두 번째는 법률안들 같은 게 검토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숙려기간도 있고 검토보고서 48시간 전에 받아야 되고 하는데 사실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일정이 갑자기 잡히고 법률안 같은 것이 갑자기 올라가고 하니까. 여당의 스케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회에서 숙려기간 같은 것을 좀 지켜서 하자, 그래서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시면, 소위원장님만이라도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최대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들이 있어서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원칙을 꼭 지키는 쪽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이나 안건 등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도 사전에 가능한 협의를 거치고는 있는데 보다 실질적인 협의를 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우리한테는 협의가 없었어서요.

○**소위원장 김용민** 행정실을 통해서 협의를 드리고는 있습니다마는 더 실질적인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정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입니다.

이학영 의원안은 지난 11월 26일 한차례 소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고동진 의원안과 오세희 의원안은 25년 9월 5일 소위에 직접 회부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리비 부과 항목 표준계약서 명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을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관리비 부과 항목이 표준계약서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항목임을 드러내고 관리비 부과 항목이 실제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유도하여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2024년 5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일부 임대인이 5% 차임 증액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이고 서울특별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임대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학영·고동진·오세희 의원안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관리비를 약정한 경우 임차인이 납부기일에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학영·고동진 의원안은 관리비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오세희 의원안은 관리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청이 없어도 임대인이 관리비 납부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어 관리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공개해야 되는 관리비의 내역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관리비 관련 입법례는 4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11월 26일 소위 심사 경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나 실제 법 효과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납부한 관리비의 사용내역을 알려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액관리비를 약정하는 경우 등에는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분쟁의 소지만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법무부 확인 및 보고 요청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법무부가 확인하고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세 번째, 법률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리비 납부 의무를 규정한 제1항은 선언적 규정으로 삭제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과 그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문구를 규정하자는 법무부의 제안이 있었고 정당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 법제적 보완이 필요한바 지난 소위 심사 경과를 반영하고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계기관 의견 중 지난 11월 소위 이후에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행법상 상가건물 관리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실질적인 임대료 인상 효과가 발생하므로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 필요에 동의하며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현행 개별법상 관리비 관련 규정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부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개정, 임대인의 공개의무 인지 등을 위해 적정한 기간으로 보입니다.

이학영 의원안, 고동진 의원안, 오세희 의원안 동일하게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이며 간단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지난 소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관리비의 개념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는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관리비의 구체적 개념과 범위를 규정하는 방안을 보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상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려는 취지에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소위 논의사항에서 법무부 상대 검토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소위원장 김용민** 예,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첫 번째 요청사항으로 주진우 위원님께서 개정안 취지 관련 실질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고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고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상가임대차법 및 시행령은 임대인이 5% 초과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차임 대신에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요청사항으로는 김승원 위원님께서 집합건물법상 관리비 내역 공개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상가건물별 임차인 수 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집합건물법상 관리비 공개 실태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법무부 및 관련 부처에서 별도로 조사·관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 시행령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하고 특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K-apt 시스템을 통해서 구체적 내용을 공시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을 참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상가건물 규모별 임차인 수도 확인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가건물별 임차인 수는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세무서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와 대법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개별 등기부를 비교·확인해야 가능한데 정보 관리주체가 다르고 양이 방대해서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전유부분 수에 따른 집합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제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된 상가건물 총 4만 761동 중에 46.99%가 전유부분 10개 미만, 또한 판매시설로 신고된 상가건물 총 3061동 중 21.14%가 전유부분 10개 미만의 소규모 건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소유자 10명 미만의 집합건물은 관리인 선임이 의무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물은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고 관리인의 비용보고 또한 실시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관리비 부과 항목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쟁점인 임대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종전에도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보완과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 질문만 좀 할게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진행하십시오.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전문위원님, 5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정의견(안) 중에 ‘공개’라는 자구를 ‘제공’으로 변경하기로 한 내용인 거지요?

○**전문위원 이은정** 예, 지난 소위에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합의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 6페이지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낸 의견에 보면 이게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 또한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재 수단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지요, 지금 개정안 중에?

○**전문위원 이은정** 명확하게 쓰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지금 2항과 3항에서 공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과태료나 벌금 같은 것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곽규택 위원** 지금 따로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조항에?

○**전문위원 이은정**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곽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김용민**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6페이지에 보면 같은 변호사단체인데 대한변협에서는 개정안에 반대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개정안에 찬성하고, 입장이 다르니까 제가 약간 헛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떤 이유로 여기서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까?

○**전문위원 이은정** 보고드린 대로 일단 제출한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고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은 작년에 소위 전에 들어온 내용이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의견은 올해 저희가 다시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기존의 법이나 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재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의무 규정이 있으면 이 규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변호사회가 왜 다른 의견을 내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요.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미 몇 번 토론이 진행됐으니까요.

지금 7페이지에 있는 수정의견으로 정리를 하는 게……

○전문위원 이은정 8페이지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문구를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결정해 주시면……

○소위원장 김용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을 넣자는 게 법무부 입장이고 또 정당한 사유 자체가 불분명할 수 있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고 팔호 되어 있는 부분을 넣을지 말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 의견 조금만 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

○서영교 위원 죄송한데 관리비가 뭐예요? 그러니까 관리비는 항목이 뭐예요?

○전문위원 이은정 보시면 관리비 항목이 이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법률에도 규정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 좋게 4페이지에 보시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관리비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관리비를 정리해 드렸고요. 또 관리비 외에 ‘사용료 등’이라는 용어로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관리비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부과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좀 보시면 되고요.

또 9페이지에도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규정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려면 12페이지, 16페이지 그리고 14페이지에 각각의 법률에서 관리비 항목의 세부명세가 있는데 모두 통일되어 있지 않고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서 지금 결정하기보다는 아까 법무부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에 위임하면 다른 입법례를 참조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법률에 규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영교 위원 우선 제가 조금 걱정하는 것은 관리비가 뭐냐, 그러니까 임대료 인상의 상한을 정했더니 관리비를 많이 받아서 집합건물—상가가 주로 그렇지요—상인들이 피해가 크다, 관리비가 갑자기 대폭 올라서 ‘왜 올랐는지, 뭐에 쓰였는지 좀 알려 주세요’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법무부차관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듯이 관리비를 좀 명확하게…… 관리비가 전기료, 물세 그다음에 공동전기료 그리고 공동감가상각비 그리고 공동경비 이런 것에다 또 뭐가 있을까요, 공부하신 것에 의하면? 제가 다를 봐서.

○전문위원 이은정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냉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또 위탁관리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통 다른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되게 많네요.

그러면 차관님,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그냥 작은 임대건물을 갖고 있고 작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관리비를 크게…… 임대료를 많이 올리면 나가요. 예를 들면 변두리에 있는 건물은 요즘은 임대료를 많이 올리면 나가거든요. 그래서 상한을 정해 놔도 임대료를 많이 올리면 나가기 때문에 관리비도 많이 못 올려요.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내에 있는 핫플레이스 건물은 임대료를 많이 올릴 수 있는데 못 올리

게 해 놓으니까 관리비를 많이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지역…… 저 시골에 관리비 공개할 이유가 있을까요? 관리비 많이 올리면 나가 버리지 거기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관리비 제공의 의무가 있어요’ 막 이러면 잘 지내던 사람들이 약간 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이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나 현실에서 부천에 있는 거대한 큰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왕창 올렸는데 왜 올렸는지 공개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조금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다. 누가 저 시골의 관리비를 공개하라고 하냐, 저 변두리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인데 관리비 나와 봤자 공동전기세에다가 그런 정도라면. 이게 조금 구분화되어야지 안 그러면 좋은 취지로 만든 이유가 나중에는 서민들 간에 약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게 그때 제가 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구분해 주시면 좋겠다.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부천의 그 집합건물처럼, 이게 기사가 여러 개 나왔어요. 그리고 여의도의 집합건물 거기 지금 갑자기 관리비가 확 뛰어 가지고…… 이런 데는 공개하고 ‘관리비 명목이 뭐냐? 그 관리비에 맞게 해라’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나경원 위원 그러면 잠깐……

그런데 서영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면 지금 이 법안에는 그냥 ‘임대차계약 시에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하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모두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기본 원칙이? 아니면 예외가 있나요?

○전문위원 이은정 아닙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면 아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런 거라도 넣자는 것이, 법무부에서 어떤 제한을 좀 두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은 별로 적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비의 개념도 사실은 어떤 경우는 전기료는 각자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관리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떻게 정의하느냐,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가임대차법을 제가 보니까 관리비 정의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법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관리비라 함은 임대인·임차인이 관리비로 하기로 약정한 내용이다’, 왜냐하면 이걸 통일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떤 건물은 전기료가 따로따로 되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상하수도도 따로따로 된 경우도 있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정의 규정이라도 둬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제공한다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로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법무부는 그런 것 때문에 ‘정당한 사유’를 넣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이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하는 기준의 표현으로는 약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조금 하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지금 법이 너무 불명확하다. 관리비의 개념, 두 번째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 상가임대차 보호에 있어서 임차인을 더 강하게 보호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오히려 임대인이 을인 지위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정말 변두리 건물의 임대인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서영교 위원님 지적 말씀에 동감하면서 이걸 저희가 조금 만져서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기서 열른 만들어 보고요.

○**소위원장 김용민**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이 개정안이 왜 들어갔나 하면 임차인 보호 때문에 들어간 규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도 5% 차임 증액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임대인들이 관리비를 인상을 해 가지고 차임의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거기에 넣어 가지고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 같거든요, 표준계약서에 넣어 가지고.

이 법 개정의 입법취지는 임차인 보호거든요. 임차인 보호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임대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렇게 가야 될 사항이어 가지고 저는 이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리비에 대해서 불명확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지금 전문위원이……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리비 정의 규정이 충분히 여기에도 같이 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합니다. 저는 다만 정당한 사유와 관련해서도 의무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낫지 정당한 사유 때문에 임대인이 이것을 또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되면 입법취지가 물각될 수도 있겠다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일단 전문위원님, 지금 10페이지에 보니까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이건 집합건물법이구나. 그러면 상가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상가가 많으면 전체 무슨 관리단에서 관리비를 일괄해서 임차인한테 제공해 주지 않나요?

○**전문위원 이은정** 상가건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고요.

○**김기표 위원** 집합건물만.

○**전문위원 이은정** 지금 집합건물법, 유통산업발전법……

○**김기표 위원** 그렇게만 있다?

○**전문위원 이은정** 예,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거고요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리비 사용내역 이런 것들이 다른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상가건물만을 위한 규정은 없고요. 다만 상가건물이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집합건물법에 해당하지 않는 상가는 관리단도 없나요, 굉장히 많은 상가의 경우에?

○**전문위원 이은정** 예, 그것은 되게 소규모 상가의……

○**김기표 위원** 이것을 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 어떤 것이 규정돼 있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거나 10개 이상이면 보통 관리단이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관리비를 관리하고 전유물의 전기세 이런 건 각자 다르게 해서 얼마 정도 부과할 것 같은데, 아파트에 살다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몇 개 이상의 상가는 그렇게 관리하면

이걸 둘 실익은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이 법이 개정돼서 적용되려면 불과 몇 개, 한 두 세 개 모여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임차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전문위원 이은정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집합건물법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도록 돼 있고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5년간 관련된 내용을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번 소위 때 논의는 구분소유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위원님들이 그렇게 논의를 하셨는데.

문제는 집합건물법에서 관리비의 개념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정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표준규약을 반드시 적용하는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관리인의 경우에 있어서 집합건물법에 표준규약이 있는데 그 표준규약을,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것인가가 임의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리하면 예를 들어서 한 건물이 한 4층, 5층인데 소유자가 하나고 상가가 한 일곱여덟 개 된다 그러면 적용되는 거네요, 이 법이?

○전문위원 이은정 그렇지요.

○김기표 위원 예를 들어 집합건물은 상가도 포함할 테니 구분소유자가 10개 이상만 되면 관리인을 당연히 선임해야 되니까 그것은 당연히 관리 내역이 나오는 것이고, 관리비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적용되는 것이 아무튼 소유자는 10인 미만이면서 그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3~4인이다, 상상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건물에 상가가 한 10개 있는데 세 명 정도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관리인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는 실익이 있다는 건가요?

○전문위원 이은정 예, 가장 실익이 있는 건 구분소유자가 10인 미만인 경우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관리인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에서 표준규약을 반드시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상가건물법에서 이걸 의무화해 놓으면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0인 미만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법무부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상가건물이나 집합건물이 어떤 식으로 교집합이 있는지 저희가 실제 통계자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의견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이렇게 계속 논의가 되면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 사실 임대료 상한 때문에 옆으로 풍선효과처럼 가서 관리비를 높이 받아서 임차인들에게 아주 부담을 많이 주는 사례가 속속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법안이 통과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과되길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 법안이 굳이 필요 없는 곳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 그러나 그런 곳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 법안이 있으면…… 관리비야 적게 내는 곳은 적게 내는 대로 관리를 하면 되는 거고 크게 내는 곳은 크게 내는 대로 관리를 하니 관리비에 크게 분쟁이 없는 곳은 이것을 요구하고 이럴 일도 없을 것 같고요. 뻔히 서로 아는 것인 것

같으나, 그런데 갑자기 뻥튀기가 된 곳이 제가 보기에는 안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건물주가.

그러니까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에 좀 더 구체화시켜서 지금 이 법이 없음으로 해서 관리비를 내놓지 않고 임차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곳에 이 의무를 행사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들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 아파트만 해도 관리비가 그 아파트 주민대표자회의에서 어디 어디 어디까지 관리비 명목으로 사용해서 관리비라고 정해 가지고 주는 것 같아요. 정화조 비용 아니면 공동 이렇게 해서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다 정해 줄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상가건물 큰 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빨리 하고 좀 구체적으로 분쟁은 없게끔 법무부가 시행령에 넣으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제가 조금만 정리해 보고 시간을 드리면……

○나경원 위원 제가 아이디어 내면 안 돼요?

○소위원장 김용민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나경원 위원 이 법안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까 시행령 말씀하셨는데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리비와 그 구체적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한다’ 해서 시행령에 그 정도 위임을 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소위원장 김용민 여기에 보면 3항에 시행령 위임이 있어서……

○나경원 위원 어디 있어요?

○소위원장 김용민 8조에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다른 법들도 보면 관리비를 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해 둬서 관리비에 대한 정의 규정 그리고 사실상 적용의 범위도 지금 시행령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였잖아요.

○나경원 위원 예, 그러니까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여지를, 그러니까 ‘따라야 한다’로 그냥 해 버리면 이것을 원칙으로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따라야 한다’면 무조건 제공 의무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예외를 조금 만들어 주자는 거잖아요, 숨통을. ‘정당한 사유’를 빼는 대신에 그런 규정은 안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소위원장 김용민 정당한 사유라는……

○서영교 위원 그런 것은 아까 말씀처럼 시행령으로 넣어서 하는 게……

○소위원장 김용민 좀 정리해 볼게요, 말씀하신 것을.

2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분은 굳이 넣지 말고 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지금 ‘관리비의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정보 제공의 범위 혹은 대상…… 그러니까 대상 말하는 거지요?

○나경원 위원 예, 대상.

○소위원장 김용민 법무부차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이해가 되시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이해가 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법의 실효성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의견 먼저 말씀 주시고 법무부차관님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은정 제가 보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을 빼도 이것이 반드시 임대차 계약 시 합의한 경우에만,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납부하기로 합의한 경우만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시 합의해서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지금 3항의 규정도 괜찮고요. 아니면 좀 더, ‘관리비의 구체적인 대상, 내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법률에서도 관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서. 왜냐하면 너무 세세한 내용이라 법에서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무부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차관님, 의견 말씀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 법무부에서 정당한 사유를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임대인의 범위가 너무나도 넓고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견을 제기했던 것이었고요.

지금 수정안에 따르면 관리비의 개념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다른 법률도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상가 임대인에 관한 통계와 정보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 부과자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대통령령에 정한다고 위임을 하셨을 때 저희가 그거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약간 의문이 있어서 제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지금 임대인의 전체 범위를 적용 대상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 기준이라든지 점포 규모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 범위 이상만 의무를 부과하실 것인지 여부를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행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 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공을 해야 되는 임대인의 범위와 대상을 또 일부 제한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을 나누기도 쉽지 않은데 했다가 자칫 법의 실효성이 몰각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1항에서 어차피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라는 제한이 하나 있으니……

○나경원 위원 그런데 합의라는 것이 그거 자체가 불평등하거든요. 우리 지역구에서 사무실 운영해 봐요. 나 많이 당해 봐서……

○김기표 위원 전문위원님, 그러면 다시 이걸 명확히 합시다. 오늘 결정을 하려면 제가

좀 이해가 돼야 되니까,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느……

○전문위원 이은정 정확하게는 구분소유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김기표 위원 구분소유자가 10인 미만, 한 건물에 구분소유자가 10인 미만인. 그다음에? 임차인이 몇 명이든 간에 구분소유자가 10인 미만인 경우만 해당되는 법률을 만들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 이은정 아니, 거기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법률이 적용되는 정확한 범위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구분소유자가 10인 미만인 상가건물입니다. 그런데 구분소유자와 전유부분의 수가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구분소유자가 10명이라 하더라도 전유부분은 50개, 100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결국 집합건물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그것만 지금 적용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이은정 예. 그런데 또 극단적으로 하나의 상가 그러니까 임대인도 1명이고 전유부분도 1명이고 임차인도 1명인 경우까지도 적용될 수 있어서……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적용되는 예잖아요.

○전문위원 이은정 예, 그렇지요. 그게 확실히 적용되는 거지요.

○김기표 위원 그러면 정보공개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규정을 하면. 그렇지요?

○전문위원 이은정 그러니까 정보공개라는 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관리비처럼 K-apt 이런 데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번에 ‘공개’에서 ‘제공’으로 바꾸셨거든요, 문구를.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알려 주는 겁니다.

○박은정 위원 제공해 주는 거지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작은 데는 제공하면 되는데 지금 악의적인 건물주는 제공이 아니라 ‘공개해!’ 이래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 법은 왔고. 그런데 이게 너무 넓어 가지고……

○박은정 위원 그래서 ‘제공’으로 바꾼 것 같아요.

○서영교 위원 그런데 그런 자들한텐 공개하게 하고 처벌도 따라야 되는데……

복합건물은 또 그 나름대로 있어요.

○전문위원 이은정 예, 그런데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나경원 위원님 아까 이의제기하시면서 이거 얘기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대안을 말씀 한번 더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나경원 위원 저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우리 지역구 사무실에서 관리비를 갑자기 올려서 제가 할 수 없이 지역구 사무실을 뛰진 사람으로서……

○박은정 위원 나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합의한 경우기 때문에 1항으로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나경원 위원 그런데 합의 자체가 약간 불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올며 겨자 먹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서영교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게 엄청 다른 건데, 임대인이 갑인 데가 있고 임차인이 오히려 갑인 데가 있는데 이것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이

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나눠야 될지는……

○**소위원장 김용민** 기본적으로 그 문제의식은 동의를 하는데 지금 법무부차관의 얘기로도 나누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지금 법에서 나누기는 더 불가능할 것 같고 대통령령으로 이 부분을 위임할 거냐 아니면 일단 일률적인 적용을 하면서 1항에 따라서 합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외 가능성성이 1항에서 열려 있으니 이렇게 갈 거냐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기표 위원** 저도 이거는 해야 된다는 대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아까 예외적으로 이 법률에 의해서만 실효성이 있는 분야에서 그걸 규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로 쭉 해 가지고 만약에 악의적인 임대인이 올리겠다고 마음먹고 조금씩 조금씩 추가했을 때 거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예를 들어 ‘이게 왜 10만 원이나 더 올랐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실효성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전기료야 딱 나오는 거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추상적인 개념의 숫자는 어떻게 하지요?

○**서영교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사례가 되면서 이렇게 온 게, 기사를 한번 더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냥 평범한 사람은 저렇게 올리면 나가면 됩니다. 올며 겨자 먹기로 하는데. 이게 뭐였느냐면 그 건물을 하나를 누가 통째로 인수를 해 버렸어요. 부천에 있는 무슨 건물을 통째로 인수를 해 가지고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 바뀐 다음에 말도 안 하고 관리비를 올려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없으니 이게 소상공인들에게 왔고 그게 법안으로 온 거다라고 저는 역사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게 법이 좀 들어가고, 다른 경우는 다 알아서들 하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법무부가 조금 더 얘기를 해 보시고 잠시 정회했다가 20분 뒤에 이 논의를 다시 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용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무부, 정회시간 동안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쟁점으로 언급하셨던 전문위원 수정의견 중에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에 있어서 임대인·임차인이 갑을 간의 지위 차이로 인한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전기, 가스, 수도료 등도 포함되는데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것은 임대인에게 정하는 범위를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범위와 관련해서 저희가 먼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세무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요. 상

가임차인의 경우에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신고를 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임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한 건물 안에 큰 점포와 작은 점포가 있었을 때 큰 점포에는 정보를 제공하고 작은 점포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현실에 있어서도 좀 차등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법무부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공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라고요. 임대인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정에서도 제재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관리비를 임대인이 받을 경우에 그 내역에 대해서 제공을 하는 범위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 제공해야 되는 임대인이 부당하게 권리 침해를 받지 않는 부분은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으로 현실적으로 커버하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는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을 넣을지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우선 저는 이 논의가 이와 같이 규정을 두게 되면 약정을 한 이후에 관리비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관리비의 지출이 그 정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부당이득으로 이것을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인지를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이와 같이 규정을 두게 됨으로써 관리비를 공개하게 되면 그 이후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번 논의에서도 제재 규정을 어떻게 둘 것인지 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당사자들 사이에 정액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정액으로 약정을 안 한 경우라면 사실 공개를 해야만 그것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공개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액으로 약정을 했다면 그 정액이 실질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봐서 그것이 차이가 나게 되면 그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인지를 먼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영교 위원** 회수할 수 있어야지.

○**소위원장 김용민** 논의를 충분히 한 것 같기는 한데 아까 저희가 사전에 논의했던 것처럼 ‘정당한 사유’ 부분이 없더라도 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충분히 들어가 있고 한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니 지금 수정안에서 ‘정당한 사유’ 부분이 제외된 수정안으로 일단 처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박은정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특별히 반대 없으시면 그렇게 처리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법률관계 부분은 향후에 자연스럽게 해석상 만들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사전에 관리비를 책정할 때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관리비 책정의 공정성을 처음에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효과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이 수정한 의견에서 2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분은 따로 넣지 않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부칙을 6개월 그다음에 경과규정 적용례를 둔 부칙이 있었지요. 이 부분은 수정 의견대로 가면 되는 거지요? 수정의견대로 부칙 6개월 그다음에 관리비 내역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에서 개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기표 위원** 이것 제공하는 임대인도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도록 그렇게 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를 빼면?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이대로 가는 거지요.

○**김기표 위원** ‘정당한 이유 없이’ 빼고?

○**소위원장 김용민** 예.

○**김기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임대인도 대통령령에서 하는 것으로?

○**박은정 위원** 그것은 아닌 것 아니에요?

○**김기표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박은정 위원** 예.

○**소위원장 김용민** ‘임대인이 제공하는 관리비 내역 등’.

○**곽규택 위원** 임대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취지 아닌가요? 적용하는……

○**소위원장 김용민**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아까 법무부가 얘기를 해서……

○**김기표 위원** 불가능하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서 ‘등’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잘, 계속 현실을 반영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정부가 잘 조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6)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8)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2)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6)

(15시27분)

○**소위원장 김용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4건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혜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혜진** 4건의 아동학대처벌법, 소위 자료 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용기 의원안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상담 및 교육 위탁을 했음에도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백승아·정성국·최은석 의원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서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에 교육감이 의견 제출을 하고 이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나 불기소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3페이지 보시면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서 임시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임시조치는 조문 보시면 격리나 접근 금지 그다음에 친권 제한, 그 외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의료기관에의 교육 위탁 등이 있는데요. 지금 현행법에서 1호부터 4호까지에 대해서는 징역, 벌금, 구류 등의 형벌을 부과하고 있지만 그 이후 5·6·7에 대해서는 제재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시면 표가 있는데요. 현행법에서도 그런 유사한 내용의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미이행 시 모두 제재처분을 부과하면서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공백이 있어서 개정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상담, 교육 위탁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저희 의견으로는 5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 위탁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의 위탁도 미이행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수정안을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의 백승아·정성국·최은석 의원안 보시면 지금 교원의 교육활동 중에서의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를 검사는 참고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사건의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 24조에 따라서 무조건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이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판단한 경우에는 검찰에 불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10페이지 보시면 각 개정안의 내용 비교표가 있습니다.

백승아 의원안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경찰관이 무혐의 판단하면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고, 정성국 의원안은 지금 교육감의 의견 내용을 규정하셨는데요 정당한 생활지도다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경찰관이 불기소 의견을 주면 이때 불송치할 수 있고, 최은석 의원안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하면 불송치 할 수 있고 다만 불송치에 대해서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또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교원이라고 하면, 이 법에서 교원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인데요. 이 경우에 교원들에 대한 신고는 교육감이 의견을 주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아동학대범죄사건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전건을 모두 다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일적 처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전용기 의원안에 대해서는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

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전문위원 수정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백승아·정성국·최은석 의원안에 대해서, 현행법이 아동학대사건을 전전 송치로 유지하는 취지는 아동학대범죄가 은폐가 용이하고 피해아동의 자력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형사절차가 아닌 아동보호사건 절차가 존재하여 검사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교육감의 의견 제출 여부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더라도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사건 중에 약 12.7%의 사건이 검사의 아동보호사건 송치 또는 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은석 의원안에서는 검사에게 재수사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미 현행법에서 검사의 재수사 요청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피해아동을 공백 없이 보호하기 위해서 소추조건 결여로 불기소처분, 공소권 없음을 해야 되는 사건에서도 검사가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경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검사에게는 이에 대한 재수사 요청 권한만 부여한다면 이 법의 입법취지와도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에 따르면 구체적 사건에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상담·교육이 적합한 경우에 그것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되고요. 아울러서 전문위원회의 수정안인 의료기관 위탁 미이행의 경우도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마찬가지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쟁점인 교육감 의견 제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법무부차관께서 제기한 입장과 같은 취지인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냐라는 부분만 판단하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심사를 할 것인지, 교육감이 의견 제기를 한다면 아예 아동보호사건까지도 나아가지 않게끔 하는 것으로 제도를 설계할 것이냐의 문제일 텐데요. 현재의 법령상에 의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의 경우에도 송치를 해서 검사에게 아동보호사건으로 이 사건을 규율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게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전문위원 의견안에 동의합니다.

○박은정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그러면 지금 불송치 관련해서 법원행정처 입장은 교육감 의견하고 상관없이 불송치 전반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예, 그래서 적어도 아동보호사건으로 보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형사사건으로서는 불송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것을 아동보호사건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 그 판단은 결국 검사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여지는 남겨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박은정 위원** 일단 이 규정 24조가 지금 법원행정처 의견대로 형소법 개정이 반영이 안 돼서 남아 있었던 규정이었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안을 반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법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소위에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검 통계를 확인했더니 아동학대 관련 사건 말고도 전체 불송치 사건 중에서 재수사 요청하는 비율이 2.61%고 그 재수사 요청한 것 중에서 다시 송치되는 비율이 0.03%거든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미미한데 전건이 송치되면서 교사들이 굉장히 불명확한, 불안정한 피의자의 지위에 계속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교육자로서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무혐의, 불송치가 된다는 최종적인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그 불안정한 피의자의 지위를 종결시켜 주는 것이 맞다, 지금 형사소송법 규정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보면 첫 번째, 임시조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각 기관도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은 없으시지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항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의 일부 이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위원님,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 취지를 반영한다고 하면…… 현재 지금 전문위원의 수정안은 따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전문위원 박혜진** 저희 의견도 사실 법원, 법무부와 유사하게…… 지금 아동학대사건 전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보호사건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걸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종결을 해 버리면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때 누가 처리할 거나의 문제가 사실은 발생을 해서 이 안대로 1차적 수사종결권을 준다고 해도 보호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6조(보호처분의 결정)의 여러 가지 각호의 사유를 보면 지금 이 사안은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학대잖아요. 그러면 그 각호의 보호처분을 할 실익이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장님께서도 보호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런 실익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아동·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보호처분이 학교, 공개된 데에서는 좀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굳이 보호처분을 고민할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교육감 관련해서 한다면.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제가 구조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질적인 통계 면에서는 한번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 실제 교육감 의견이 들어간 게 아마 서이초 사건 이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교사의 생활지도나 그런 교육행위 같은 것들이 수사기관은 사실 비전문가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 어렵다라고 해서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자, 교사인 경우에 대해서만 약간 특별한 규정처럼 지금 돼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보호조치 부분이,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되고 불기소까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교육행위로 양 기관이 다 인정하는 것이라 영역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곽규택 위원님.

○ 곽규택 위원 이게 쉽게 말해서 아동학대사건에는 전건 송치 규정을 둔 것 같은데 그 취지를 고려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취지를 완전히 허무는 것보다 지금 세 의원님이 내신 의견이 반영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법경찰관에서 전건 송치를 지금처럼 하더라도, 지금도 아마 경찰관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혐의가 없다거나 그런 의견을 달아서 송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성국 의원님안 같은 경우에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그 의견을 인용해 가지고 송치를 하면 일단 되는 거고, 불기소 의견 이렇게 했다고 해 가지고 불송치를 한다는 예외를 두면 아까 법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의 생활지도라는 의견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좀 형평에 안 맞는다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차관님 의견처럼 기소는 하지 않되 아동보호사건으로의 필요성을 남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세 의원님이 내신 이 개정안에 대한 취지만 살리면 되지 제도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 소위원장 김용민 취지를 살린다 함은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 곽규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건 송치라는, 아동학대사건은 검찰에 모두 송치하도록 하는 그 원칙은 지키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건 처리에 반영을 한다는 취지를 두든지 아니면 사법경찰관이 그런 의견을 달아서 사건을 송치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요.

○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현행은 그렇게 의견을 달아서 송치하고 있지요?

○ 전문위원 박혜진 현행법 17조의3에 ‘사법경찰관은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을 하고 본인도 참고해야 하고 검사도 사건을 수사할 때는 사건기록에 편철된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있습니다.

○ 법무부차관 이진수 전문위원님 설명에 덧붙여 부가설명 한 가지만 간단히 드리면, 이와 같이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검찰청에서도 23년경 교권 보호를 위해서 일선의 업무 지시를 통해서 아동의 교육을 위한 행위인데 그것이 남고소되거나 남고발로 인해 가지고 교사가 정당한 지도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교육감의 의견 등을 존중하도록 하는 업무연락을 시달한 바도 있었습니다.

○ 박은정 위원 일단 그런 업무연락 자체가 강제성이 없고, 제가 이걸 잘 모르겠는 게 교육감 의견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사경이 혐의 없다, 불송치하겠다고 하는 사건 자체를 검사가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무혐의거나 공소권 없음이거나 학대 자체가 되지 않는 사건이 불송치가 될

텐데 그런 사건을 검사에게 전건을 송치한다, 교육감의 의견을 붙여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건지…… 그건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건 송치해서 재수사 요청을 하는 거면 몰라도,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님이나 법무부차관께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부분이 공백이 있다라고 하는 그게 제가 이해가 좀 잘 되지 않거든요. 이건 불송치면 그냥 불송치인데 다만 기록을 보내냐 안 보내냐 그 문제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면 그게 아동보호사건으로 가는 거지 불송치되는 게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실무상.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닙니다, 위원님.

○박은정 위원 어떤 사건이 있을 수가 있지요? 불송치하는데, 무혐의하고 그다음에 공소권 없음 처분하는데 그 사건이 전건 송치됐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보낸다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보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어떤 사례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게 무혐의인데?

○법무부차관 이진수 혐의 없음이거나, 그러니까 형사상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더라도 아동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건들은 그와 같이 아동보호사건으로……

○박은정 위원 그게 비율이 굉장히 미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비율적으로 통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것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를 유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상 검찰에 전건 송치하더라도 실제로 거의 대부분 검사들이 전건 송치한 사건을 보지 않을 거라서 그리고 재수사 요청하는 비율도 낮고 한데 나머지 모든 구십몇 퍼센트의 교사들을 불안정한 상태에서 전건 송치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지위에 계속 둘 수 있겠는가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서 이초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것은 대검의 업무연락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하지만 조금 전 설명을 드렸다시피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건 중에 12.7%가 아동보호사건 또는 기소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셨을 때 이러한 의견이 제출된 사건 중에서도 가정보호사건 송치와 기소된 사건이 12%에 이른다는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실제 거기서 무죄율, 유죄율은 통계가 나오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거기서 재판 결과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요. 특별히 아동학대사건이라고 해서 무죄 비율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 검찰의 무죄 비율은 1~2% 사이 정도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리고 기소율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사건 이 비율은 못 나누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구분은 실무자에게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 법의 취지가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로 다양한 신고들이 들어오는데 교사가 그 신고로부터 빠르게 해방돼야 되고 정상적인 교육 업무에 복귀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서요. 그 취지가 반영되면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점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완할지 이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3개의 안 중에서 최은석 의원님의 안 같은 경우에는 재수사 요청을 예외

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보호사건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지요.

○조배숙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보면 24조가 사실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손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남아 있는 규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그런데 이 개정안을 보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건 중에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교육감이 제출한다고 해서 당연히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송치하려면 교육감의 의견 제출이 어떤 조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조배숙 위원 교육감의 의견 제출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열핏 드는 느낌이, 물론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해야 된다는 그 작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그래서 이게 형사사건에 있어서 교육감의 의견이 불송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혐의 불송치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과 그러면서 이것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넘길 경우에……

그러면 보호사건으로 넘기는 주체는 경찰입니까, 검찰입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검찰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불송치가 된다고 하면 검찰은 어떤 근거로 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넘겨야 됩니까? 불송치가 되면 그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전건 송치이기 때문에요 혐의 없음이면 혐의 없음, 공소권 없으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그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되는 것이고요.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개정안에 의하면 검찰에 불송치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개정안에 의하면 누가 어떻게 이것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넘기느냐 이거지요. 그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래서 저도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어야 될지 부분이 상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조배숙 위원 차관님도 그게 잘 안 떠오르신다 이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조배숙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셔 가지고……

그러면 이 법은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더 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표 위원 차관님, 불송치 의견이 보호사건으로 이행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교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게 가정 내 친권자라든지 이런 부분 다 포함된 통계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12%라는 것이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저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없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약간 공개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내에서 이루어진 것과 조금 달리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그 통계는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겁니다. 아까 12%라고 얘기하는 것을 근거로……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까 그 건에 대해서 이 자료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아까 12% 중에 기소한 사건이 4.8%, 아동보호사건 처리가 7.9%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교육감이 괜찮다고 했던 것도?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박은정 위원** 그 12%가 불송치, 그러니까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니요, 지금은 전전 송치이기 때문에……

○**박은정 위원** 전전 송치니까 기소 의견까지 다 합해서 들어가 있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전전 송치인데,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답변……

제가 아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아동학대사건 전체 중에 12%가 아동보호사건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전전 중에서?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지금 전제가요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제출한 사건, 그 사건 전체를 조사해 봤더니 그중에서 말씀드린 퍼센티지가 기소되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됐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같이 된 경우에는……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지요. 그러면 그 통계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무혐의 결정도 포함이 된 건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교육감만 딱 포함이 된 것 같고. 교육감이 생활지도라고 하더라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게 지금 구별이 안 된 통계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구별이 안 된 통계입니다.

○**박은정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경찰이 무혐의 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해야 되는 사건도 전전 송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그 전전 송치한 것 중에 그것이 아동보호사건으로 가는 사건은 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중에서 경찰은 무혐의이고 공소권 없다 하더라도 검사가 보기에 ‘이것은 학대가 돼’라고 생각하면 아동보호사건으로 보낼 수는 있지만 경찰에서 명백히 무혐의거나 공소권 없음 사건이고 검사가 보기에도 그런 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합의가 이루어졌다든지 그런 공소권 없음 사건들도 상당히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보호사건으로 보내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공소권 없음 경우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일단은 합의가 됐기는 하지만 행위 당시에는 학대가 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게 무혐의거나 공소권 없음인 경우에도, 합의 말고 다른 이유로 공소권 없음 이런 명백히 기소할 수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건 송치돼서 교사들이 불안정하게 지위가 유지가 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전건 송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형사소송법 규정하고도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한 건데, 저는 비율적으로 법무부차관이 말씀하시는 저 부분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 까지 포함해서 12%지 그 외에 불기소해야 되는 사건 그러니까 불송치하는 사건을 전건 송치했기 때문에 아동보호사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소위원장 김용민**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지금 결국에 보호조치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기는 있는데 통계를 정확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이 생활지도라고 판단했고 경찰도 불기소 의견이었던 사건 중에 전건 송치돼서 검사가 기소했거나 보호조치한 사건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박은정 위원** 그렇지요. 정확하게 그거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이렇게 통계를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건들 중에 불기소 의견으로 보냈는데 기소한 사건만 딱 빼서 무죄율을 따로 별도로 뽑아 주십시오. 전체 사건의 무죄율이 아니라 교육감 의견이 있었고 불송치 의견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그래도 검사가 기소했을 때의 무죄율, 제가 알기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무죄율이 높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케이스는 무죄율이 굉장히 높고 법원이 거의 다 교육감 의견대로 판결을 한 것이라고 제가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통계를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보면서 이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거기에 더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보호조치를 어떻게 할까요? 전건 송치를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하면 보호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의견을 추가로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지금 저희가 전건 송치를 개정안에 따라 안한다고 했을 때 보호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 정도로 논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배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이런 개정안이 나온 이유가 교육감이 의견 제출한 사건의 경우는 대부분 검찰에서 무혐의가 됐습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서 지금 그 통계를 좀 달라고 한 겁니다.

○**조배숙 위원** 제가 잠깐 놓쳐 가지고요.

○**소위원장 김용민** 맞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마 이 부분은 통계로 산출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감 의견 제출 부분을 저희가 전수 찾아야 하는 등의 작업을 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요. 여하튼 저희가 최대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통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차관님, 통계 확인하실 때 그런 사례들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봐 주세요. 수치만 말고 사례를 한번 좀……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저도 짧게만……

교권, 학생 인권 다 중요한데요. 만약에 전건 송치를 제외하게 된다면 저는 어찌 됐건 안전장치에 최은석 의원님안 참고해서, 만약 피해아동이나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이 있으면 검사에게 가는 것은 어려운가요?

○**김기표 위원** 불송치 이의신청이 일반적으로 되지 않나요?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되잖아요. 지금도 불송치 이의신청하면 기본적으로 검사에게 가잖아요. 그거와 유사하게 전건 송치를 안 하게 되고 교육감의 의견을 1차 의견으로 불송치 의견 하면 보고를 안 하되 피해아동 또는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해서 당연히 불송치 이의신청, 지금 현재 절차처럼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검사에게 그대로 가게 하면 어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가 검토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에서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제도가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교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동학대인지 여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과 학부모 측이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감내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측면에서 그게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저도 교육감 1차적 의견 제출에 대해서……

○**소위원장 김용민** 고소·고발도 학부모가 처음 시작하면서 사건이 시작되는 거라 그 문제는 조금 다른 얘기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무튼 교육감 의견 제출에 대해서도 사실 광역의회의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압박 수단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의견도 과연 중립적이고 공정할까라는 의구심이 있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성국 의원안도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아마 이게 전건 송치를 안 하면 일반 형사소송법으로 넘어가서 이의신청하면 검찰로 송치되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박균택 위원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박균택 위원** 워낙 민감한 문제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신중한 토의를 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너무 뻔한 원리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거 그냥 법원행정처 의견처럼 일반 형사소송법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도 법무부가 진지하게 한번 논의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성범죄사건도 중요하기는 마찬가지고 더 중요한 살인사건들도 다 중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생명, 범죄 또 신체에 관한 사건들이 있는데 굳이 아동사건만 이렇게 복잡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대신에 경찰청에 아동사건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해 가면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수사할 수 있도록 뭔가 행정적인 권고를 하고 일반 형소법 원칙대로 가는 방법이 어떨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오늘 논의는 교육현장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동학대사건은 집안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범행이 발생을 하고 또한 암장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건 송치 제도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장님, 저한테도 한 말씀만 더 올릴 기회를 주시면요. 저희가 처음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에 심사자료에서 기재된 부분을 아예 삭제하자는 것으로 의

견 개진을 했었는데 추가 검토를 해 보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보호사건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법원행정처의 기본적인 입장은 삭제를 하기보다는 아동보호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아까 구두로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금 문건하고 좀 다르고 다른 위원님들이 문건에 기초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요.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항은 이견이 없으면 오늘 처리를 할까요, 위원님?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지요? 나눠서 가자는 의견들이시니 그러면 4항만 수정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5)

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3)

(16시02분)

○소위원장 김용민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이상 2건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은정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9항, 권칠승 의원,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우측 상단입니다.

배상명령 대상 범죄 확대에 관한 내용은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고려하되 타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 절차의 지연 등에 따른 피고인의 인권 문제, 형사재판부 판사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손해 확인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명확한 범죄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등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행법상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죄를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상 배상명령 대상인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규정된 죄와 개정안에서 추가하려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죄는 그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비교해 보면 현행법상 배상명령 대상인 죄보다 신규로 규정하려는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도 덜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규정된 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 발전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 또한 매우 광범위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이러한 범죄 등을 추가하는 것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허위 영상을 제작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청소년성보호법상의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와 제15조의2(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죄를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피해 또한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므로 피해 회복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피해를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부 인용 및 직권 명령 활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배상명령 신청의 일부만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를 인용하여야 하고 전부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상명령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직권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배상명령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미 유사한 내용의 재판 예규가 있고 법률로 상향되어 규정되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가급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배상명령 유죄판결서에 배상신청인 신원 기재 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배상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이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유죄판결서 정본이 피고인에 송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법원이 직권 또는 배상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송달되는 유죄판결서의 정본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형법상 강간 및 추행죄,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된 배상명령 대상 성범죄에 대해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배상명령 신청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인적사항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배상명령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실제 강제집행에 있어 채권자가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명령 판결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집행, 채무이행 등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장치가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부칙입니다.

권칠승 의원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박은정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의원안 중 법원의 일부 인용 의무화 및 판결서 피해자 신원 기재 생략 부분은 개정 시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해당 조항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딥페이크 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등을 배상명령 대상으로 추가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려는 취지에 공감하고 의견 없습니다.

다만 박은정 의원님안에서 배상 신청의 일부만 이유 있는 경우 전부 기각이 아닌 일부 인용을 원칙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 피해자의 신원자료를 가지고 송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에 공감하고 의견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상명령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일부 인용 및 직권 명령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배상 신청에 관한 예규에 따라서 실무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쟁점인 배상명령 유죄판결서에 배상신청인 신원 기재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종전 심사자료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도 입법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판결서 정본 자체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에 있어서 곤란한 측면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배상명령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본에 인적사항이 기재돼야지만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안으로서는 피해자에게는 정본을 송달하되 피고인에게는 음영 처리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피고인에게도 여전히 인적사항 기재가 있는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이 형사소송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정도 올리겠습니다.

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배상신청인의 신원 기재 금지 이게 하나가 쟁점이 될 것 같네요. 다른 부분들은……

○**나경원 위원** 일부 인용 및 직권 명령……

○**소위원장 김용민** 그 부분도 법무부가 일부 이견이 있었지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피해가 굉장히 크고 그중에서 허위영상물 반포와 관련해서 배상명령 대상에 추가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모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의견을 내 주신 것이 피해자 신원과 관련해서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피해자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는 충분히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딥페이크 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의 신원을 가장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 이것이 2차 피해, 2차 가해라든가 그 후에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문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려서 제가 입법을 하게 된 취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무부에서 직권으로 명령하는 부분이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직권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판결 단계에서 충분히 배상명령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크게 저촉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중간에 하나 질의드릴게요.

법원행정처에서 배상신청인의 신원 기재 금지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셨는데 강제집행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영 처리하는 것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강제집행 때 음영 처리되지 않은 정본을 들고 가서 강제집행 처리를 할 수는 있겠지요, 말씀하신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그런데 배상채무를 임의 이행할 때에는 음영 처리가 된 배상명령 가지고는 이행이 어렵지 않겠냐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우선 음영 처리 부분보다는 판결문 정본에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재 부분을 생략하게 되면 이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하신 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그러면 판결서에는 기재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보면 피해자의 신원 노출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피고인한테 송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은 음영 처리를 하고 송달을 하게 되면 노출이 좀 안 될 측면이 있긴 한데 그것도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런 성폭력사건이 배상명령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과거에도 이 논의가 한번 있었고요. 그게 아마 2015년도에 본 회의에서 통과된 것 같은데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 때문에 우선 배상신청서가 접수되면 그것을 송달할 때는 음영 처리를 해서 보내도록 하고 있고요 배상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 있어서는 성명, 주소를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용이 돼 버리게 되면 이게 민사집행, 민사 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집행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특정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이 부분은 법원행정처 의견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상명령 집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용민** 법원행정처는 지금 이 개정안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지요, 결론은? 대안을 하려면……

○**박은정 위원** 하려면 다른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지요. 같은 법을 많이 개정해야 되니 하지 말자는 입장으로 이해해야겠지요, 지금?

나경원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조금 고쳐서……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단순한 반대라기보다……

○**나경원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이 안을 접하고 나서 총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될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총론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처럼 운영을 한다면 어떤 법령이 개정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나경원 위원님 더 말씀하시지요.

○**나경원 위원** 이거는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충분히?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대안을 만들어서 대안으로 이렇게 해서 통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입법취지는 좋으나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강제집행 부분이 있으니까 대안으로 마련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부 인용 및 직권 명령은 이게 법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인 판단이라고는 이야기했는데, 신청이 일부 있는 경우에 일부 인용을 해야 된다……

○**조배숙 위원** 이미 예규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예규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걸 법으로까지 강제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입법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그냥 예규 수준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법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표현은 못 하겠는데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일부 인용 부분은 조금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다항·라항이 이견이 있으신데 가항·나항은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나경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서 가항·나항을 먼저 처리하고 다행과 라항은 조금 더 의견을 정리해서 계속 심사하는 것은 어떨까요?

○나경원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김기표 위원 그 전에 저도 의견 하나만 잠깐……

○소위원장 김용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 그렇게 하시되, 지금 배상명령 신청했을 때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 많이 하나요? 저는 별로 못 봤거든요, 거의 다 기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우선은 저희가 통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로 배상명령은 사기사건과 관련된 재산범죄에 대해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인용 비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청구를 한 5만 건 정도 했는데요 인용된 것이 한 1만 8000건 정도 됩니다.

○김기표 위원 그래요? 1만 8000건이나 했다고요?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예, 그런데 그중에 사실은 성폭력 관련되는 배상 신청은 사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기표 위원 사기죄는 생각보다 많네요, 배상명령 다 기각하는 것 같던데.

일단 제 의견은 일부 인용은 오히려 장려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민사소송 할 것을 사실 배상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부 인용하는 식으로 하면 나중에 실제로 민사에서 받을 부분하고 오히려 오버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일부가 가능하면 일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직권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것은 수사하는 절차에서 만약에 배상명령이 인정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하겠느냐’ 이런 어떤 예규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의사를 물어보는 것을 확인하면 즉하지 법원에서 신청이 없는데도 하는 건 조금 법리상 어떤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논의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위원님들, 가항·나항 부분만 특별한 이견이 없으니 오늘 처리하고 다행·라항은 계속 심사하면서 법원과 법무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9항은 관련 내용들을 대안에 반영하되 남은 내용의 심사를 위해 소위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1)

(16시20분)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정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의사일정 제10항 박준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간이회생절차 신청권자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 급여소득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소액영업소득자 개념에 급여소득자를 추가하여 ‘소액영업소득자 등’으로 통칭하여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급여소득자도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영업소득자에 비해 부채구조가 단순하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 회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소득자도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소득자인 파산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법제적 보완이 필요한바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와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4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세한 채권자목록 제출을 통한 간이회생절차 기간 단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간이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함에 있어 첨부해야 되는 서류 중 ‘채권자목록’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으로 변경하고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이 제출된 경우 제147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제출해야 하는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기간 동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등의 목록 제출 기간이 부여되어 야기되는 절차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간이회생절차의 신속성·효율성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법 개정 시 일부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간이회생절차 법정 소요기간 단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법원이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신고기간, 조사기간, 제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법원이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는 경우 정하여야 하는 기간에 있어 개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

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서 일부 법제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법무부와 협의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1페이지의 수정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면제재산 범위의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면제 결정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면제재산에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아니될 영업용 차량, 도구, 재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재산'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법원이 일정 금액 범위 내의 영업용 필수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이 파산하는 경우 영업용 필수재산 보전을 통해 이들의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재기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 개정의 취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재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법원에 면제재산 결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즉시 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으며 면제재산으로 결정된 이후에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은 재산을 활용하여 영세 소상공인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파산신청으로의 전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파산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파산절차로 전환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재판 실무에서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상황에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개인회생의 취하 및 개인파산의 신청을 권유하는 내용의 절차 전환에 관한 보정명령을 내려 개인파산절차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형태로 제도를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594조의2제5항의 위임규정에서 제4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체계·자구에 관련된 내용은 법원행정처, 법무부와 협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규칙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선 등으로 인해 일정 시일이 소요된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시행일 외에 별도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급여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제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파산신청으로의 전환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어 그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행정처, 법무부와 협의하여 부칙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36페이지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는 간이회생절차의 신청 자격을 급여소득자까지 확대하고 절차 소요기간을 단축하며 파산채무자의 영업용 필수재산이 파산재단에서 면제됨을 명확히 하고 회생이 아닌 파산으로 진행되어야 할 경우 파산절차로 바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취지의 본 법률안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전문위원실과 법원행정처 의견을 모두 수용해서 조율한 것으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에서도 간이회생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법률안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저희도 법무부와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개진했기 때문에 모두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은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차장님, 라항 파산재단 면제재산 말씀이지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영업용 차량, 도구, 재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거 있잖아요. 제383조 2항 2호에 보면 채무자 생계비 있잖아요, 6개월 생계비.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의 영업용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인데 각각 적용돼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이성윤 위원**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이잖아요.

‘생활에 필요한’, 앞에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차이가 뭐예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2항에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계를 유지할 때 필요한 것이고요 3항에서는 영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차이가 뭔지, 대통령령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통령령 혹시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나요?

그것도 ‘차량’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안 들어가 있어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제 말씀은 383조 2항 2호가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지금 개정안하고 통합적으로 규정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지금 2호는 대통령령으로 금액을 정하도록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3호는 범위를 정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게 ‘준하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초과……’, 그건 똑같잖아요. 가액이잖아요. 같습니다. 같은데, 이것하고 똑같이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거

잖아요. 이 부분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알겠습니다. 2항·3항의 관계를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표 위원** 방금 영업 관련해서 필수적인 그것 있잖아요, 저는 그냥 기우일 수는 있는데 그것을 규정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금융을 좀 제약하는 면은 있지 않을까요? 그걸 담보로 못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는데 보통 그것을 가지고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을 일으킬 수가 있을 텐데 이게 파산재단에 속하지 못하면 그런 제약하는 점은 없을까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 부분도 좀 확인이,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김기표 위원** 그런 의문이 언뜻 들어서 여쭤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사실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두 분의 위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하셔서, 그러면 계속 심사하고 지금 질문하셨던 부분들은 다음번에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한가요?

○**이성윤 위원**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되는데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답을 못 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서……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러면 잠시 저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답변 좀 올리고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사법지원총괄심의관입니다.

이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호의 생계비는 현재 어떤 소득 기준에 따라서 반드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생활비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개정안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이 영업용 자산은 사실 꼭 생계 유지를 위한 돈과 좀 달리 영세 소상공인들이 트럭 가지고 과일 같은 것 파는 그런 소상공인들의 트럭을 파산재단으로 넣어 버리면 도저히 더 이상 소득이 발생할 수 없어서 생계도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건을 설정하는 것이고, 아마 대통령령으로 도입하게 되면 그 물건을 너무 고액으로 설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재산가액의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설정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제 의문은 어차피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383조 2항 2호는 6개월이 특정돼 있고 똑같이 특정한 재산이에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그러면 이걸 규정할 때 제가 보면 어차피 생계에 필요한 것이 급여소득자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중복 규정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파산 면제재산은 통합 규정해 주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헛갈릴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그리고 이거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으로 면제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 최근에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회생을 되게 도모하는 정책에 부합해서 제안해 주신 내용인데 저희 법원에서는 법원에서 결정하면서 기준에 결정받은 사건들 목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과되지 않게 결정을 충분히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기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산에 대해서 파산재단에 대해서 면제되면 오히려 그 부분을 금융담보로 활용할 수 없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

역시 이게 만약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트럭이라면—아까 제가 트럭을 예로 들었는데요—파산재단에서 면제하는 결정을 법원에서 쉽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다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건인 경우에 이 규정이 대체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보니까 2호는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이고 3호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될 영업용이라 조금 결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성윤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383조 2항 2호하고 이렇게 두게 되면 급여소득자가 파산재단에는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채무자는 빚잔치하면 재산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채무자 천국이라는 말이 나올까 봐서 그게 걱정이 돼서 하는 것이고 이 면제재산 조항은 가능한 좀 단순하게 합쳐 주는 게 좋다. 면제를 자꾸 넣으면 넣을수록 오히려 채무자한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위원님, 오늘 처리하지 말고 한 번 더 계속 심사할까요?

○**이성윤 위원** 아니, 빨리 좀 하자고 하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바로 지금 답을 하기는 어려우신 것 같으니 그러면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또 심사할 법안들이 많이 있어서요.

○**김기표 위원** 이 법안이 지금 급한가요? 하기야 빨리 되면 좋겠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는 지금 이성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 심사할 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결국에는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법원에서 범위를 결정을 해서 면제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 가지 고려사항으로서 신청의 범위를 넓힌 것이라 지금 이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법원에서 면제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필요하면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시기로 하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및 12항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회의 진행 및 법안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 법률안을 먼저 심사한 후 제11항 및 제12항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405)

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65)

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55)

(16시37분)

○**소위원장 김용민**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공수처법이라고 약칭하겠습니다.

공수처법 13항~15항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장 넘기시면 목차가 있습니다. 공수처법 3건, 목차에 1번부터 13번까지 안건이 있는데요. 대체로 이성윤 의원, 장경태 의원, 김용민 의원이 낸 것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자를 확대한다든지 수사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 기소권의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 검사 및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는 부분, 검사의 연임 제한을 폐지해서 신분을 안정하게 하는 부분, 공수처장의 장관급 격상, 결격사유 확대 이런 것 해서 공수처의 조직을 좀 더 확대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 법안 3건이 되겠습니다.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쪽이 수사대상의 인적 범위 확대로 이성윤 의원, 장경태 의원인데요.

4쪽으로 넘어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개정안별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성윤 의원안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장경태 의원안의 경우에는 기존의 검사 및 판사 외에도 군판사, 군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이런 것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5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원래 공수처의 주요 수사대상은 원칙적으로는 정무직공무원을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했고 대통령비서실이라든지 국정원 이런 권력기관의 경우에는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성윤·장경태 의원안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도 포함되고 시군구청장 이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도입할 경우에 현재 기준으로 약 한 7500명이 수사대상자의 가능성 범위 내에 있는데 1500명 이상이 추가돼서 9000여 명이 공수처의 잠재적인 수사대상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 6쪽에 보시면 공수처 정원이 85명 정도여서 수사대상 확대는 인력 확대 이런 부분하고 연동돼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사대상 범죄가 확대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12쪽으로 넘어가셔요 12쪽에 보시면 이성윤 의원안은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강요죄, 공갈죄, 변호사법 위반죄 이런 걸 추가해서 돼 있고요.

13쪽, 장경태 의원안의 경우에는 도표의 두 번째 아래쪽에 보시면 추가 대상 범죄에 부정청탁금지법 이렇게 쭉 나열돼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의 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쪽의 현재 공수처법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 종류는 참고자료로 갈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렇게 수사대상을 확대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입법취지가 있는데 끝에 보시면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대상 관련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

는 범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에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개정안은 그 주체를 불문하고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또는 공소 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성 있는 범죄의 범위가 모호해서 수사권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검토의견으로 드리고요.

18쪽으로 가겠습니다.

기소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인데요.

19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수처법 3조 1항은 고위공직자범죄나 관련 범죄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소권의 경우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 범죄에 한정해서 인정하고 있는데 이성윤 의원 안에 따르면 이 범위를 넘어서 고위공직자와 관련 범죄를 범한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기소권을 갖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22쪽으로 가겠습니다.

검사 및 수사관 등 정원 확대입니다.

22쪽의 표 보시면 8조에 수사처검사는 현행에 보시면 25명으로 돼 있는데 이성윤 의원 안의 경우에는 공수처 검사라고 명칭을 바꿔서 30명 이상 50명으로 돼 있고요. 검사의 임기는 3년·3회에 한정돼 있습니다마는 연임에 대해서만 장경태 의원이 규정하고 3년 임기 이런 것을 없앴습니다.

10조의 수사처수사관의 경우에도 보면 현행은 40명 이내로 23쪽에 돼 있습니다마는 공수처 수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50명 이상 70명으로 해서 정원을 확대하면서 신분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25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취지가 공수처 인력을 확충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26쪽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공수처의 검사 정원이 25명이고 40명 이내로 수사관이 구성돼 있고 또 공수처 인원이 85명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죄가 수사 난이도가 높다는 점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특히 또 행정직원의 경우에 국회 업무라든지 예산 업무, 인사 업무 이런 기본적인 업무 때문에 행정인력 소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9쪽으로 가겠습니다.

29쪽은 검사의 임기 연임 제한 폐지인데 이것도 검사의 신분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전체적인 취지고요. 현재 수사처검사의 임기가 3년·3회 해서 최대 9년까지 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없애고 좀 더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32쪽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검사의 임기 3년·3회 한정, 최대 9년까지 하고 정년을 63세로 하는 이런 것을 없애려는 이유는 제일 밑의 검토의견에 보시면 검사 20명 재직기간 인원수를 살펴봤더니 2년 이상 재직자 비율이 28% 정도로 나타났고요. 수사관의 경우에도 임기가 6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정년 60세인데 3년 이상 재직 수사를 수를 조사해 봤더니 21명밖에 안 돼

서 52.5%만 재직해서 이런 검사 및 수사관의 퇴직률이 많이 높았다. 이에 따라서 업무 연속성이 저하돼서 수사 효율성이 더 떨어지고 조직 운영을 불안정하게 하기 때문에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33쪽 하단에 보시면 공수처 소속 검사 임기를 7년으로 연장하고 7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요건도 삭제해서 검사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공수처 소속 수사관 임기도 폐지하는 등의 신분 안정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공수처 검사·수사관에게 당초 임기 제한을 둔 취지는 공수처의 권한이 고위공직자 이런 특성이 있고 또 권한이 막강해서 혹시 권력 유착 등이 발생할까 봐 권한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장치로 임기 제한을 둔 취지 이런 부분도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걸로 봅니다.

3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설명만 올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장의 장관급 격상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38쪽의 주요 내용에 보시면 차장은 장관 대우로 올리고 차장은 차관급 대우로 격상하려는 이성윤 의원안이고요.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도 검찰직공무원에 준하여 대우하고 그리고 공수처장이 의안의 제출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수처의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4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및 수사관 결격사유 및 정치활동 관여 금지인데요.

공수처의 신분상 지위나 이런 걸 강화하는 대신에 결격사유를 조금 확대하고 정치활동 관여 금지는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었을 경우에는 그 퇴직 후 2년 내에는 취직할 수 없어 공수처에 올 수 없었는데 3년으로 더 연장하고 정당 당원 이런 것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은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해서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42쪽으로 넘어가서, 이런 결격사유 확대나 정치 관여 금지는 그 취지가 인정됩니다마는 43쪽의 중간에 언급돼 있다시피 직업선택의 자유라든지 공무담임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등 고발의무 부과 부분인데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특히 수사·감사·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이라든지 국세청, 권익위, 금감원, 이런 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임을 알게 된 경우에 공수처에 고발 등 수사 의뢰를 반드시 하여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취지상은 공무원의 내부고발이라든지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활성화로 공수처의 수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이 인정됩니다마는 그 의무를 부여할 공무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더 논의가 필요하고요. 내부고발을 했는데 그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0쪽으로 가겠습니다.

수사권 경합 조정을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사협의회를 설치하는 조항입니다.

55쪽으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성윤 의원안이 24조의2에서 수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 간 수사권 중복 시에 중복수사라든지 수사기관 간 갈등에 따른 비효율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할 수단이 미흡해서 여러 가지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수사기관 간 갈등 조정을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의 수사협의회를 두어서 수사기관 간 협의·조정을 담당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쪽으로 가시면 56쪽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사협의회 설치 취지는 수사협의회 신설의 경우 충분히 인정됩니다마는 수사기관 간 권한 경합의 협의·조정을 담당할 업무를 국무총리 산하 별도 기관이 할 경우에 그런 협의·조정 절차가 또 하나의 권력 수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결국 수사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수처를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화하는 부분인데요.

60쪽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독립기관이라는 의미는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회라든지 대법원, 현재, 중앙선관위 등을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규정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독립기관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든지 감액하면 그 이유 이런 것을 특별히 듣도록 하는 독립기관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독립기관의 의미를 공수처에도 부여하자 이런 취지인데 다만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에서 공수처에까지 이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오른쪽 61쪽에 보시면 공수처의 예산과 관련돼서는 독립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입법 과정에서 드러나 있던 의도가 각주로 표시돼 있고요.

참고로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개별 법률, 감사원법이라든지 국가정보원법이라든지 그런 개별법을 마련해서 예산 자율성을 부여하는 그런 기관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업무의 독립성은 있습니다만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례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63쪽으로 가겠습니다.

형사보상·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규정은 약간 실무적인 차원이 있어서 넘어가고요.

그다음 68쪽으로 가겠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인데요.

69쪽에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군사법원 관할의 장성급 장교 이런 범죄사건을 했을 경우에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어서 송부한 사건에 대해서 송부받은 검사 또는 군검사는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70쪽에 가시면 현재 공수처법 26조를 보면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했

을 경우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자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 요구를 누가 누구에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규정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71쪽, 기타 개정 사항으로는 3조의2 보시면 이성윤 의원안에 공수처 소속으로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부분, 그 하단에 보시면 46조의2(사건의 대국민보고)에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공수처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저희 공수처는 1번, 2번, 3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4번에 대해서는 장경태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는 의견 없으나 이성윤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는 임기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임기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공수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5번, 6번에 대해서도 의견 없습니다.

7번, 검사 및 수사관 결격사유 확대 및 정치활동 관여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의견처럼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8번, 행정기관의 고발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취지를 공감하나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형식을 ‘고발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완화해 주시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그리고 9번에 대해서는 검토의견과 같이 국가수사위원회 도입 논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번, 11번, 12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 법무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공수처의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고 수사대상을 확대해서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모하는 법률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공수처 조직의 강화, 수사·기소 범위 확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수처의 운영 목적, 설립 취지, 공수처의 수사 역량 및 사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그 수사 및 기소 범위를 확대하고 이첩권 등을 강화하여 타 수사기관에 대한 우위를 인정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자칫 공수처 검사의 권한 남용으로 귀결될 우려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기존 검찰의 수사개시 기능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신설하는 등 국가 전반적인 수사·기소 구조 개편 논의가 논의 중인 상황으로 공수처법의 개정도 이와 같은 일련의 검찰개혁 입법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공수처 수사대상 범위와 기소권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 및 수

사협의회 신설, 공수처 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과 관련된 부분은 수사기관 간의 조정 및 권한 배분에 관한 입법자의 결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다만 한 가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만 부기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 외에 공수처 검사·수사관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임기 연장하고 중원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으니 오늘은 개략적인 토론을 중심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에서 이 안을 가지고서 논의를 그동안 해 온 것 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논의할 때 그 자료도 참고해서, 다음 회의 때 그 자료도 제공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소위원장 김용민** 혹시 발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박균택 위원** 거기서 발의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리실로 자료를 넘겨서 논의를 할 텐데 공소청·중수청 법안 중심으로만 넘길지 이 법안도 넘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공수처 법안까지 총리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소위에서 논의할 때 그 자료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체적인 논의가 아니다 보니까 추상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공수처의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임기를 조금 늘리고 또 수사력을 보강해 주는 차원에서 인원을 늘리는 데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다만 수사·기소권 분리 이런 시대적 흐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관할 범위를 인적으로는 좀 제한하는 게 어떤가. 수사·기소·재판을 담당하는 사람 중심으로 권한을 주되 그들의 직무상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가 왜곡될 우려를 생각한다면 공수처에 그것까지도 다 권한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인적 범위에 있어서 나머지는 솔직히다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마는 국회의원을 빼거나 대통령실을 뺀다고 한다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 그리고 대통령실 정도로 제한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세부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때 의견 표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위낙 쟁점이 많아 가지고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공수처 차장님, 지금 정원이 몇 명인데 공수처 검사는 몇 분이신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검사 정원이 25명, 수사관이 40명, 행정직원이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총 85명입니다.

○**곽규택 위원** 검사만 기준으로 하면 정원 25명인데 현원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현원은 지금 21명입니다.

○**곽규택 위원** 21명.

인력을 늘리고 대상을 늘리고 결국에는 이게 공수처를 키우겠다는 법인데, 참 그래요.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검찰청을 아예 없애 가지고 공소청으로 가는데 그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걸 반성적으로 고려를 해야지요, 그렇게 가는 추세에 과연 맞는 기관이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그렇게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체제로 가고 검사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사실은 차제에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으로 가는 게 전체적인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공수처만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고 조직을 키우겠다 하는 게 과연 추세하고 맞는 건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정말로 공수처에 지원하는 사람이, 검사가 없어 가지고 도저히 기관 운영 자체가 안 된다 하면 그 선에서 예를 들어서 7년 이상 경력을 법원하고 맞춰 가지고 한 5년 이상 경력으로 한다든지 또 지금의 임기보다는 조금 늘려 가지고 하는 정도의 방안은 모르겠지만 인력, 예산, 조직, 다 늘려 가겠다고 하는 취지는 전반적인 것하고 안 맞고.

민주당에서도 다른 안을 준비하신다 하니까 그것하고 같이하시고 나중에 검찰청이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과연 어떤 모양으로 갈지 큰 가닥이 잡히면 그때 같이 논의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성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윤 위원** 공수처 차장님, 이 법안을 보시고 어떤 소회를 가졌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저희가 인력,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확대를 해주시는 안을 빌의해 주신 데 대해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성윤 위원** 그 이전에 지금 공수처가 20명의 인원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 수사 경험으로 보면 인원이 많다 해서 수사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정말 수사하려는 강력한 의지 이게 중요하고 또 최근에 공수처가 보인 모습을 보면 너무나 무력했어요.

차장님, 차장님께서 지금 법원 지귀연 판사 수사 중에 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최선을 다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성윤 위원** 그렇게 답할 일이 아니지요. 지금 법원에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공수처에서는 법원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에서 지귀연 판사 수사 중인데 혹시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가 아니라서 수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뇌물죄와 관련된 저희 관할 범위에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원칙에 따라서 활발하게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여러 번 법사위에 나오셔 가지고 법원은 ‘공수처 수사를 기다린다’, 공수처는 ‘수사 중이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법안 까지 빌의해서 인원을 확충해 주는 데는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귀연 판사 고발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결과도 없고 ‘수사 중이니까 말할 수 없다’ 계속 그러면 공수처가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만일에 수사대상에 뇌물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으면 수사 결과를 가지고 법원에 통보라도 해 주세요. 그래야 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사건을 빨리 종결해 줘야 우리 국민들께서도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 범위도 늘려 주고 인력도 늘려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지금처럼 이런 나약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여 주면 이 법안이 국민들과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무조건 인력 늘리고 기간 늘리고 이런 것 늘리는 것 좋아할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

우선 문제가 감사원 사건도 빨리 해결해야 되고, 이것 2년, 3년이 다 되고 있거든요. 법원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는 고발된 지 벌써 몇 달이 됐는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공수처에 사건이 가면 감감무소식, 함흥차사가 돼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해 가지고 법원에도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고, 만일에 수사대상이 아니면 아닌 대로 수사 결과를 법원에 알려서 법원에서 조치를 취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아까 나경원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요.

○나경원 위원 사실 지금 검찰청을 해체하는 민주당안에 저희는 근본적으로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늘 보니까 예전에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했던 주장한 근거하고 완전히 모순되는 주장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서 핵심 중의 하나가 저는 연임 제한 규정을 오히려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를 설치하고자 민주당이 주장했을 때 그 주장의 근거는 공수처는 정말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들이 일종의 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하기 위해서 연임 제한 규정도 안 두고 그때 소신 있게 일하자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완전히 미니 검찰청화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연임 제한 규정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 보시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수사기구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짜는 데 있어서 너무 통제되지 않는 강한 기구를 사실상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누가 정권을 잡든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말하는 수사·기소 분리의 유일한 예외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하시고요.

하나 궁금한 게 공수처 검사들이나 공수처 수사관은 지금 누가 수사하게 되어 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검찰·경찰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돼 있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공수처 여러 개정안 또 이 설립 과정에서 고민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수사·기소가 완벽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검찰개혁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고 또 19대·20대 국회의원님들의 고민과 또 22대 국회가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수처 차장님, 지금 현재 공수처에 처장·차장 이 기관장급 인사를 제외하고는 부장과 평검사밖에 없지요,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큰 검찰처럼 어디 부장, 어디 차장, 어디 지검장, 어디 검사장, 소위 주요 요직이라고 말하는 검찰 엘리트 라인이라는 건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평검사는 1부에 있든 4부에 있든 다 똑같고, 1부 부장이든 4부 부장이든 차이가 있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동등하게 이루어져 있는 구조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장경태 위원 그래서 제가 4개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조직에는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하다못해 초등학교도 학생 수 20명 이하면 폐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슨 초등학교 숫자도 안 되는 검사 숫자로 제대로 조직이 운영되기는 어렵다.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이 연속성 있게 기관에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아 갈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임 규정은 없었으면 좋겠다.

다만 존경하는 이성윤 의원님께서 7년 임기를 하셨는데 저는 3년 정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찌 됐건 공수처가 너무 폭주한다는 우려가 있긴 해서 저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정년은 3년 정도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되 연임은 잘하는 검사들이 열심히 소명의식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검사 숫자를 발의하지는 않았는데 이성윤 의원님안대로 검사 숫자나 수사관 숫자는 좀 늘리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하고요.

검사·수사관 결격사유에서 저는 정당활동 금지 이 부분은 위헌판결 나서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장경태 위원 공직후보자 자격이나 당원의 신분 이런 것들도 특검이 아닌 이상에야 저는 굳이, 불필요한 조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군검사, 이번 채 해병 사건에서도 그렇듯이 기소할 수 없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이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법리 논쟁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추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군검사와의 관계도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저는 수사 범위와 수사대상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 의장까지 포함한다든지 범죄 혐의도 대폭 강화하는 안

을 냈는데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저희도 앞으로 논의 과정에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위원님들 주시는 의견에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조배숙 위원님 토론하시고 박은정 위원님 토론하시지요.

○**조배숙 위원** 우리 당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공수처는 탄생할 때부터 많은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역량이라는 것은 정말 하루아침에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수처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사실 성적표가 좀 초라하지 않았나요? 내놓을 만한 그런 수사 실적이 없고 또 지난 연초에 체포영장 발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판단 이런 부분도 법률 전문가로서 상당히 미숙한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공수처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인력 난이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법안을 보니까 인력도 굉장히 강화하고 권한도 강화하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시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우리는 검찰 해체라고 부르는데—그런 방향하고 맞는 것인가.

지금 수사하고 기소 분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좀 있으면, 어저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행안위에서 통과가 됐고 내일이면 우리 법사위로 넘어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수사권·기소권 분리한다 해서 중수청·공소청 간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없는 기소권도 여기다 다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그 대원칙하고도 맞지 않고, 현재 검찰 해체 그리고 수사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을 하려는 것 같은데 이 전체적인 흐름하고도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패 등 범죄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독립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고요. 처음에 공수처를 설계할 때는 보다 조금 더 크고 검찰과 대등하게 견제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설계가 되었다가 점점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점이 많은데 아마 앞으로 좀 더 새로운 법안들이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검찰개혁 입법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 공소청법·수사청법 등 수사·기소 분리하고 공수처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등 그 모든 권한을 모든 국민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그 권한이 너무 비대했던 것이고. 그렇지만 공수처는 일부의 범죄 그리고 일부의 공직자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독립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특

별하고 제한적으로 인정된 조직이고 그래서 그것이 검찰개혁의 하나의 제도로 들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 해체’라는 표현을 동의하지 않는데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 공수처에 대해서 이렇게 권한을 더 주고 그다음에 인력을 늘리고 예산도 더 늘리고 이러는 것이 맞냐?’, 이것은 좀 맞지 않은 주장이다. 검찰에게 모든 국민에 대해서 수사·기소권,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그것이 문제였지 일부의 대상 국민, 그러니까 공직자에 대해서 일부 범죄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수사대상 범죄, 추가 대상 범죄에 대해서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중에서 판사와 검사 그다음에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수사와 형사사법과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이 주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야 된다, 공수처에서.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달라지면 수사의 완결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공수처가 제대로 된 기능이나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못 하면서 수사 권한에 혼란을 주고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간에 계속 평 풍식으로 그랬던 그런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판사와 검사,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공수처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전부 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가 될 수 있으려면 그것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귀연 판사에 대한 부분도 아마 공수처가 지금 검토하면서 그것이 직무상 관련된 범죄인지의 부분에 대해서 직무상 관련된 범죄이면 공수처가 수사해서 기소를 해야 되고 만일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을 검찰에 송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판사·검사·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야 된다.

예컨대 제가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할 때 전국 검찰청의 검사들이 전부 다 집단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검찰 관련한 법안, 정치적인 이런 국회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성명서 발표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그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에서 그 검사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공수처 대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은 과거에 교사들의 일부 집단행동에 대해서 자기들이 굉장히 가혹하게 기소하고 단죄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수사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어야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대등하게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김용민 의원안의 그 부분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 말씀 들으니 오늘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심사를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357)

12.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6)

(17시19분)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2항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병섭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시면 두 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심사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박찬대 의원안은 안 제3조에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대상 사건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내란·외환 진상규명 특검법에 따른 수사대상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입니다.

이성윤 의원안은 대상 사건을 내란·외환 진상규명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 순직 해병 진상규명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척사유 관련하여 박찬대 의원안은 대상 사건 피고인에 대한 전심재판 또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성윤 의원안에서는 제척사유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영장전담법관 및 재판부 명칭과 관련하여 박찬대 의원안은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로 용어를 규정하고 있고 이성윤 의원안은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로 용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박찬대 의원안은 국회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3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성윤 의원안은 법무부 추천 1명, 판사회의 추천 4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4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천위원회 구성 기한과 관련하여 박찬대 의원안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성윤 의원안은 영장전담법관 및 제1심 전담재판부후보자추천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주 이내, 항소심 전담재판부후보자추천위원회는 제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천위원회 위원 자격과 관련해서 박찬대 의원안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성윤 의원안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전담법관 및 재판부 수와 관련하여 박찬대 의원안은 특별영장전담법관 1명 이상, 제1심 특별재판부 1개 이상을 규정하고 되어 항소심 특별재판부 개수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윤 의원안은 영장전담법관 3명, 제1심 전담재판부 3개, 항소심 전담재판부 3개를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천 후보자 수와 관련하여 박찬대 의원안은 특별영장전담법관후보자는 2명,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2배수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성윤 의원안은 영장전담법관후보자 3명, 제1심 재판부의 경우 3개의 전담재판부 각 3명씩 총 9명, 항소심의 경우도 3개의 전담재판부 각 3명씩 총 9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후보자 추천 기한과 관련하여 박찬대 의원안은 제1심의 경우 대상 사건이 기소된 날부터 2주 이내, 항소심은 제1심 판결선고에 대하여 항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성윤 의원안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의 중계와 관련하여 박찬대 의원안은 제1·2심의 경우 재판과정 기록 및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성윤 의원안은 제1·2·3심의 경우 재판과정 기록 및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을 허가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일부 중계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식별조치 면제 및 관련 공무원 민형사상 면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판부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박찬대 의원안은 제1·2심 특별전담재판부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성윤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제1·2심 및 대법원 판결문에도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기간과 관련하여 박찬대 의원안은 제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2심은 제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성윤 의원안은 제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심은 항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제3심은 상고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면 및 감형의 제한과 관련하여 박찬대 의원안은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로 유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회 동의 시 사면 및 감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성윤 의원안은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로 유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사면 및 감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박찬대 의원안은 제보자 등의 보호, 부당 인사행위 시정, 기념사업 실시, 국고보조금 제한 및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성윤 의원안은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두 법안의 내용을 비교하였고요. 이성윤 의원님안 관련하여 몇 가지만 추가로 검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영장전담법관 임명, 전담재판부 설치 등 관련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방금 설명드렸는데요 이성윤 의원님안 또한 대상 사건에 대한 영장전담법관 및 제1·2심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그 구성 절차가 박찬대 의원안과 유사하므로 기존의 찬반 의견이 그대로 적용되어 이 내용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재판과정 녹음·녹화·촬영 허가 관련해서 방금 이성윤 의원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별 특검법들에서 중계에 관한 규정과 중계 관련 공무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심사 시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개별 특검법과 박찬대·이성윤 의원안의 비교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특별·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53페이지로 가시면 이성윤 의원안 관련해서 추가 보완 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추천위원회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판사후보자에 대한 추천 기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 두 번째 이성윤 의원안의 경우 영장전담법관의 수를 3명으로 규정하고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전담재판부를 제1심에 3개, 항소심에 3개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추천위원회의 추천 시 영장전담법관 3명, 제1심 전담재판부 3개에 대한 후보자 9명, 항소심 전담재판부 3개에 대한 후보자 9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후보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박찬대 의원안의 경우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배수의 후보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는 제청할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후보자로 추천하고 있음을 고려하셔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사면 및 감형의 제한인데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이성윤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외환죄, 반란의 죄로 유죄 확정된 자에 대한 사면·감형·복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인데요.

사면의 대상에서 특정 범죄를 제외시키는 것과 관련하여서 견해의 대립이 있고 대상 범죄 내에서도 행위에 대한 불법성과 불법성에 대한 법적 평가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범죄의 성격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면 등의 제한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안에 대한 종론적인 의견은 지난 소위에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쟁점 사항이 많은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항목 논의 시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원행정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에서도 기본 입장은 지난주 법안에 대해서, 특히 재판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측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을 원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법안은 추천위원회에서 종전과 다른 2배수가 아닌 1배수의 후보자를 추천을 하게 되면 대법원장이 추천받은 인사를 바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재판부의 법관의 수와 구성을 법원에서 확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의 틀을 법률에서 처분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이 정한 법원의 기능과 권

한이 왜곡되어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부분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토론하실 위원님, 한 분씩만 하시는 걸로……

○**나경원 위원**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나경원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나경원 위원** 이게 제정법인데 제정법이면 공청회 해야 되잖아요. 공청회 안 하나요? 안 하기로 하거나 그런 건……

○**소위원장 김용민** 그런 건 아니에요.

○**나경원 위원** 그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이것은 안의 세부사항을 논의할 필요도 없이 사실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계속 특별재판부를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전담재판부로 입장을 바꾸셨는데 전담재판부 역시 위헌성이 있습니다. 뭐든지 과하면, 지나치면 부려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재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내란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판사 바꿔치기인데 이게 결국은 오히려 재판 자연도 가져올 수 있고 하니까 우리가 나쁜 선례는 안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거는 심각한 위헌적인 입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 조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내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토론하실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하시고 박은정 위원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괜찮습니까?

이성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 자꾸 ‘위헌’, ‘위헌’ 말씀하는데 행정처 차장님,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란전담재판부 이런 말씀 들을 때? 법원에 새로운 전담재판부를 하나 설치하는 게 위헌입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위헌 선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해당 법률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지금 지구연 재판부가 재판 중에 있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이성윤 위원** 피고인이 내란 사건 관련해서 몇 분인지 아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금 3개의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성윤 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전체 사건 피고인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윤 위원** 예.

과거에 검찰에서 기소했던 윤석열, 김용현, 김용군,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까지 포함 8명을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걸 침대축구하듯이 느림보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특검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6건이고 총 6개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흘어져 있어요. 그 후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결국 윤석열과 같이 재판을 해야 맞는데 지금 흘어져서 재판을 하고 있고.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몇 건을 기소해서 몇 개 재판부에 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금 5개 재판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6개 재판부에 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차장님, 이 정도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내란이면 내란, 김건희 국정농단이면 국정농단, 합쳐 가지고 전담재판부에서 재판하게 하는 게 뭐가 재판권을 침해하고 뭐가 무작위 배당 원칙을 침해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건을 각자 재판부에서 재판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특검에서 계속 추가 기소할 거거든요. 또 채 해병 특검에서도 기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재판부에 흘뿌려 가지고 각자 재판을 하게 되면 통일적인 결론도 안 날 것이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귀연 재판부에 질려 가지고, 침대 축구처럼 느림보 재판에 질려 가지고 있는데 모든 재판부가 그렇게 재판하면 국민들이 과연 우리 법원을 신뢰할까요? 법원이 이럴 때 정말 나서 가지고 ‘우리가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빨리 신속하게 재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해도 부족할 판인데 위헌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과거 세월호 때 전담재판부 검토한 적도 있잖아요. 다행히 어제인가요, 고법에선가 항소심은 집중심리한다고 선언했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이성윤 위원 그런데 언제 항소심까지 갑니까, 지금. 한덕수 재판만 해도 보세요. 이거 언제 재판 들어가고 그렵니까. 이것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범, 내란 우두머리 수괴, 내란 우두머리 방조 그다음에 단순 부화뇌동 이게 다 따로따로 수사하고 있으면 안 맞는 겁니다. 1개의 범죄예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부패범죄전담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재권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자는데 뭐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국민들이 이렇게 법원을 불신하게 된 거,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신하게 된 거, 지귀연부장을 불신하게 된 게 바로 내란 사건, 김건희 사건 이게 정말 영장 기각하고 또 느릿느릿 재판하는 바람에 윤석열 풀어 주고 또 이게 재판 언제 끝날지 모르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법원도 내란 종식, 내란 척결에 동참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려워 가지고 오실 때마다 위헌 소지 있니 뭐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당장 이렇게 흘어져 있는 사건부터 한 재판부에 모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란전담재판부 또는 김건희국정농단전담재판부 만들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정말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토론하실 겁니까?

○곽규택 위원 간단하게……

○소위원장 김용민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행정처 차장님, 법원에서 주신 의견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명확하게 제기하신 부분이 한 세 군데 정도 같아요.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에 관여하는 부분 그리고 사면이나 감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작랑감경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한 부분, 제가 보기에는 법원에서 이 정도 문제점을 지적하셨으면 저는 이거는 위헌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법무부차관님, 어떤 법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법무부는 지적을 못 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닙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법안에 대해 가지고 발의가 되면 법무부도 의견을 내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이미 위헌성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도 정부의 입장을 내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좀 적극적으로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조배숙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예.

○소위원장 김용민 예.

○조배숙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사법부의 독립은 여러 가지 의미의 독립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법관이 재판한다. 그렇지요? 그런데 또한 사법행정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배당이라는 게 있지요. 그것은 사건이 법원에 가기 전에 이미 정해진 법원의 사무 배당 규칙에 의해서 뭔가 짜여져 있는 그 틀이 있고 그래서 그 틀에 의해서 사건이 배당되고 판사가 배정이 되고 그런 부분,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법부 독립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대해서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지금 재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상당히 폭증하지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한 재판부에 사건이 있었을 때는 대개 관련되는 사건은 병합이라는 제도로 하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조배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병합이라는 실무상의, 운영상의 노하우랄까 그런 걸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판이 느려진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판사 수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사실은 법관 증원에 대한 여러 가지 암이 있었는데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그걸 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독립을 얘기할 때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이런 것 플러스 어떻게 어떤 재판부에서 어떤 규칙에서 정해진 룰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것이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재판부에 관한 오늘 이 법은 저는 굉장히 위헌이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주목을 하는 것은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을 전부 다, 지금 3인 합의인데 세 사람 다 자기 의견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합의는 원래 비공개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인 의견을 내지요. 왜 비공개를 합니까? 그것은 자유롭게 토론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결정을 내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또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겁니다. 물론 대법원의 경우에는 소수의견 다 낼 수 있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다 까라’, 그러면 이게 무언의 압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토론과 합리적인 이론의 토론이 될까 저는 그 점도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특별재판부 법관추천위원회입니다. 제가 그 추천위원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무부에서 한 사람을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법관회의에서 네 사람, 대한변협에서 네 사람하게 돼 있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추천하는 분이 후보추천위원회가 돼서 법관을 지명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배수가 아니니까, 딱 그 숫자니까 대법원장은 그분들을 지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후보추천위의 위원이 누구냐, 제가 보니까 그냥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이렇게만 돼 있어요. 도대체 누군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법이 갖고 있는 위헌성이 크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가 좀 있다는 측면의 기관 의견을 몇 번 개진한 바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차관님, 이제 이 법이 어떤 경로를 밟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수정 절차를 거칠는지. 그럼 이게 어쨌든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법무부로 와 가지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헌적인 법률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법무부는 또 그런 의견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사위에서 위헌 요소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듯이 위헌성이 담긴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장경태 위원님, 짧게 토론해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 차장님, 저는 지금 재판 배당이 여러 군데로 나뉘져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배당 현황을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국민들께서 보시면 더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그냥 쪼개기 재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미리 답을 정해 놓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 아닌가 혹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사합의21부부터 35부까지 9개 재판부에 나뉘져 있는데 존경하는 이성윤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분명히 같은 혐의의 같은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쪼개 놓으면 당연히 신건 재판으로 뒤로 배당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내란 재판이 빨리 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병합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이거 다 쪼개 놓으면 7개 재판부로 나뉘져 있는데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변호사법 위반 이런 거는 다 혐의가 되게 가볍게 논의 혹은 심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다 합쳐서 하면 한정역 50년 나와야 되는 아주 중대범죄자인데 이걸 이렇게 다 쪼개 놓고 일일이 보니까 각각 재판부는 1개 혐의만 있는 피고인으로 생각해서 재판을 심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

겠습니까? 이런 권력형 범죄가 일시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잖아요, 2년 반 동안. 그러면 같은 재판부가, 이분이 정말 바쁘게 범죄를 하고 다닌 것과 그냥 10년 중에 한 번 범죄를 한 것과는 차이가 있어야지 그게 공정한 재판 아닐까 싶은데 이건 제가 보기엔 전 국민들이 아시면 이거 누가 봐도 재판부가 봐주기 재판하고 있구나, 워딩도 그냥 ‘봐주기 재판 한다’라고 나가면 누가 봐도…… 김건희 씨에 대한 분노가 큰 국민들 입장에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종호 씨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합의23부에서 하나 피고인이 돼 있는데 이종호 씨와 그 정도 사안으로 재판받고 기소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제보받은 것, 제가 법사위원장에서 이야기한 것만 해도 정말 많은데 이렇게 재판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입법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든, 지금 법원조직법상 부를 둘 수 있게 되어 있고 법원 사법행정 권한을 사용해서도 전담부 만들 수 있으시잖아요. 정말 이것 중요하다…… 아니면 꼭 부를 만들지 않더라도 일정한 합의부에 혹은 대등재판부에 주요 사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심리하라, 이거 신건 재판으로 다 뒤로 미루지 마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5년 내내 내란 재판 하실 거예요? 그것 아니시면, 국민들이 얼마나 이것…… 저는 이 사건 재판이 지연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 여러 정치권의 갈등 또 국민적 갈등, 국민 간의 여러 혐오와 어떤 갈등의 유발, 이런 모든 사회적 비용을 다 법원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고 어찌 되었건……

물론 너무 졸속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재판부에도 제공을 하는 게 법원행정처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빠르게 심리 속행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건에 너무 치여서 정말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가서는, 특검 다 수사 종료하고 나중에 다 국수본으로 가든 다른 중수청으로 가든 수사 관할이 이관되고 이첩되고 하고 나서 결국 이 모든 사회적 비용을 저는 사법부가 책임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년 국감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법부가 오히려 먼저 국민들께 성의를 보이시는 것이 입법부의 갈등을 더 줄이는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차장님, 헌법 102조 3항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원의 조직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서 저희가 헌법 102조 3항에 근거해서 오늘 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심사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열띤 법안심사가 거의 4시간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안건들은 추후 다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나경원 박군택 박은정 서영교 이성윤 장경태 조배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이재승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